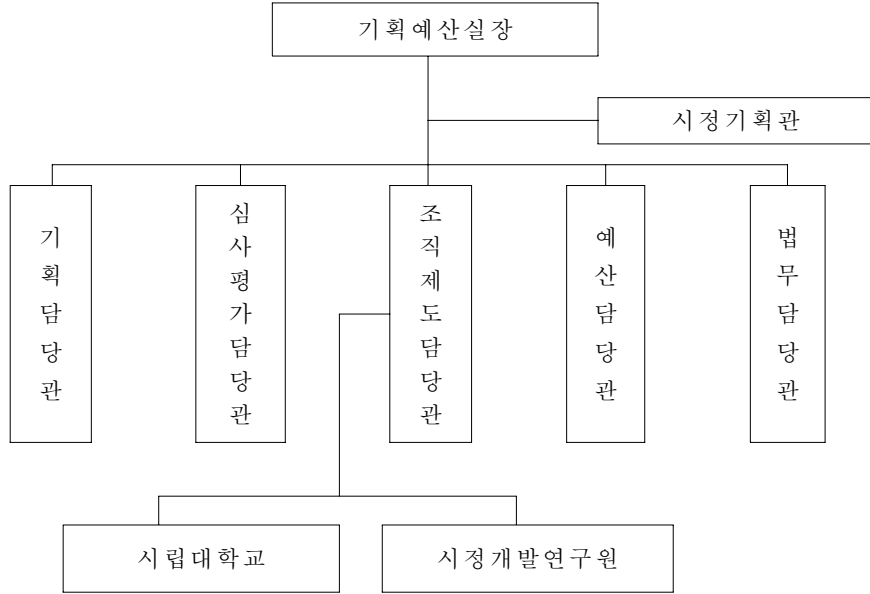


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

I. 일 반 현 황

1 조직 및 인력

□ 조 직 - 1관 5담당관 1대학교 1연구원



○ 시립대학교 : 6대학, 6대학원, 4처, 9부속기관, 12연구소

○ 시정개발연구원 : 원장, 2실, 5연구부, 1센터

※ 서울시 조직 : 3부시장, 3실, 8국, 5관, 64과, 3사업본부, 77사업소

□ 인 력 - 정원 166명(현원 162명, △4)

구 분	계	행정직	전산직	사서직	기술직	별정직	기능직
정 원	166	126	6	7	4	3	20
현 원	162	124	5	6	4	3	20
과부족	△4	△2	△1	△1	-	-	-

※ 서울시 인력 : 총 45,529명(시 15,826, 자치구 29,703)

2] 재정운용

□ 2002 예산규모

		총 계 예 산		(단위 : 백만원)	
	2002	2001	증 감	%	
	11,686,586	11,632,010	54,576	0.4	
• 일반회계	7,863,605	8,324,048	△ 460,443	△ 5.5	
• 특별회계	3,822,981	3,307,962	515,019	15.6	

일반·특별회계간 전출입 : 1,029,972백만원



		순 계 예 산		(단위 : 백만원)	
	2002	2001	증 감	%	
	10,656,614	11,012,105	△ 355,491	△ 3.2	
• 일반회계	6,845,529	7,712,304	△ 866,775	△ 11.2	
• 특별회계	3,811,085	3,299,801	511,284	15.5	

타기관 지원 등 : 4,483,649백만원
 - 자치구 1,386,335, 시교육청 1,796,261, 지하철공사 전출 등 1,301,05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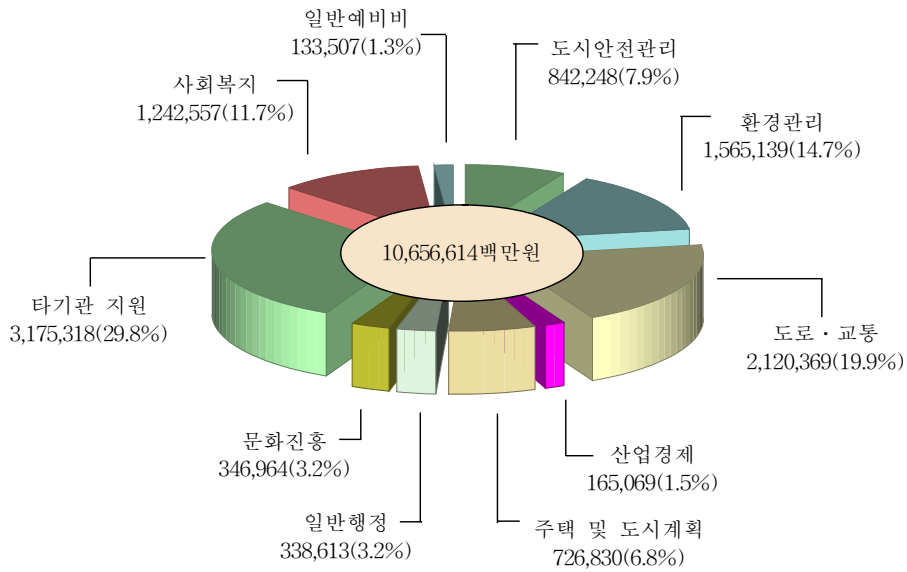


		실 집행 규모		(단위 : 백만원)	
	2002	2001	증 감	%	
	6,172,965	6,639,050	△ 466,085	△ 7.0	
• 일반회계	3,140,789	3,989,653	△ 848,864	△ 21.3	
• 특별회계	3,032,176	2,649,397	382,779	14.4	

- 기금운용 : 18개 기금, 2조 3,437억원(실운용규모 1조 6,737억원)
- ※ 자치구 예산 : 3조 6,715억원(자치구 평균 1,469억원)
- ▷ 평균 재정자립도 : 52.9%(최고 : 중구 93.0%, 최저 : 은평 31.1%)

□ 부문별 자원배분(순계예산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

□ 기획예산실 예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2	2001	증 감	%
계	24,030	25,715	△ 1,685	△ 6.6
기획담당관	7,882	716	7,166	1,000
심사평가담당관	1,658	1,333	325	24.4
조직제도담당관	11,093	20,019	△ 8,926	△ 44.6
예산담당관	788	1,431	△ 643	△ 44.9
법무담당관	2,609	2,216	393	17.7

-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7,927백만원
-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신축 2,335백만원
- 민사·행정소송 수행(배상금 등) 2,161백만원
-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1,129백만원

II. 주요 업무

1. 『시정운영 4개년계획』 수립

□ 기본방향

- 민선3기 시정이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실천계획
- 기존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, 소요재원과 재원대책을 제시하는 실현가능한 중기계획
- 미래학 전문가, 시민단체 대표,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『21C 서울기획위원회』를 구성·운영하여 종합적·체계적으로 수립

□ 추진일정

- 21C 서울기획위원회 구성 : 2002. 7월
- 과제발굴 및 시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: 2002. 8~9월
- 시의회 보고 및 계획 확정 : 2002. 10월

※ 21C 서울기획위원회 구성·운영

- 구 성 : 20명
 - ▷ 위 원 장 : 공동위원장제(민간인위원장, 행정1부시장)
 - ▷ 기획위원 : 18명(시의원 2, 전문가 12, 시정연 1, 공무원 3)
 - ※ 실무분과위원회 운영 : 9개 분과위 50명 내외
- 운영기간 : 2002. 7.16 ~ 10.31(105일간)
- 지원반 운영
 - ▷ 21C 서울기획단, 실·국·본부별 『실무추진반』, 시정개발연구원 『실무지원반』 운영

2. 『청계천복원추진본부』 설치

□ 청계천복원 추진체계

- 기본방향
 - ▷ 내부조직인 『청계천복원추진본부』와 외부전문가 위주의 『청계천복원추진시민위원회』 설치·운영
 - ▷ 시정개발연구원에 청계천복원 관련 연구·조사·기획을 담당하는 『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』 설치
- 역할분담
 - ▷ 위 원 회 : 정책방향 자문, 시민단체 의견수렴, 대시민 홍보
 - ▷ 추 진 본 부 :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 추진
 - ▷ 지원연구단 : 도시계획·설계, 도심재개발, 교통·환경 등 연구수행, 공청회 등 사업 지원

□ 『청계천복원추진본부』 : 행정2부시장소속, 1본부 1단 2반 체제

- 본부장은 계약직 가급(1급 예우), 추진단장은 2·3급으로 보함
- 반장은 4급으로 하고 총 9개팀(5급)으로 구성
 - ▷ 소요인력 : 48명(계약가급 1, 2·3급 1, 4급 2, 5급 9, 6급이하 35)
 - ※ 사업일정 등을 감안, 우선 임시기구로 설치 후 정규조직화 추진

□ 『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』 구성

-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청계천복원추진시민위원회 구성

※ 하반기 조직정비 방향

- 시장의 정책구상 실천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조직 우선 보강
- 기구설치 기준과 정원범위 안에서 필수기능 수행부서 강화

3. 성과관리 시정운영

- 1년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와 주요사업을 체계화하여 성과계획 수립
- 성과계획과 성과주의 예산, 목표관리제, 심사평가제를 유기적으로 연계·운영하여시정성과 극대화

성과계획 수립 및 평가

□ 성과계획 수립·시행

- 대 상 : 28개 기관(실·국·본부, 시립대, 공무원교육원, 시의회사무처)
- 구 성 : 107개 전략목표, 299개 성과목표, 1,455개 주요사업

성과평가

- 시 기 : 정기 종합평가(분기 1회), 수시 집중평가(필요시)
- 활 용 : 목표와 사업의 진도를 분석하고 및 달성수준을 평가하여 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성과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

목표관리제 운영

- 관리대상 : 223명(시 본청·시의회·사업소 1 ~ 4급 공무원)
- 목표설정 : 776개 목표

구 분	총 계	1~3급				4급
		소계	1급	2급	3급	
인 원	223	50	8	14	28	173
목 표 수	776	170	34	58	78	606

평 가 : 연 1회 (12월말 기준)

- 평 가 자 : 3급이상 공무원 - 시장, 4급 공무원 - 소관 부서장
- 평가결과 : 근무평정, 연봉 및 성과상여금 산정기준으로 활용

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운영

추진방향

-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·보완
- 민간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한 「시민만족도 조사」 시행

대상분야 : 26개 분야 525개 평가지표

자치구관련	민간위탁	공공서비스 시 설	시 투자기관	시 행정서비스	공공적성격 민간서비스
5	5	3	5	2	6

추진계획

- 조사시기
 - ┌ 상반기(4~ 6월) : 13개 분야
 - └ 하반기(9~11월) : 13개 분야
- 조사기관 : 한국갤럽 등 9개 민간 전문여론조사기관
- 조사대상 : 분야별 서비스 이용시민(방문 및 출구조사)
- 평가결과 활용
 - ▷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공무원의 성과측정에 활용
 - ▷ 시 투자기관, 민간위탁업체, 시내버스업체 평가시 활용
- 지속적 평가시행으로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개선대책 마련

4. 건전한 재정운용

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 추진

그동안의 추진사항
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건의(2002. 5. 15)
 - ▷ 시험수당 조정, 생활체육협의회 정액보조단체 지정 등 8건

- 국고보조금 신청 : 총 183건 1,494,795백만원
 - ▷ 지하철건설 및 부채관리금 상환을 포함한 운영보조 485,432백만원 신청
 - ※ 국고보조금 반영률 : 2001년(36.4%), 2002년(34.6%)
 - 예산편성 잠정기준 및 한도액 시달(2002. 7. 2)
 - ▷ 서울시 잠정기준 우선 시달 - 행자부지침 시달 후 보완 예정
 - ▷ 2001년 결산결과, 2002년 결산전망 등을 고려하고, 2002년 중기재정계획 등을 참조하여 실·국·본부별 기본경비 및 사업비 한도액 내시
- 2003년 예산편성 - 추진일정에 따라 10월말까지 완료

정 부	서 울 시
-----	-------

- 예산편성 지침 시달	3. 31까지	7. 31까지	} 중기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시민의견 수립
- 예산요구서 제출	5. 31까지	8. 15까지	
- 예산의 조정	6 ~ 9월말	8 ~ 10월말	
- 예산의 결정	9월말	10월말	} 의사 일정에 따라
- 예산안 제출	10. 2까지	11. 11까지	
- 예산안 심의	10 ~ 11월	11 ~ 12월	
- 예산안 의결	12. 2까지	12. 16까지	

200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

- 편성기본방향
-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중 금년도 하반기에 기초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해야 할 사업비 우선 반영
 - ▷ 청계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, 수해항구대책 등
 - 그 동안의 예산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여건변화, 시책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 조정
 -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은 억제하고, 경상사업비는 내부조정을 통한 흡수로 추정 요인을 최소화
 - ▷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은 이·전용을 통하여 최소화
 -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반영
- 추경재원 규모 — 3,536억원
-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,919억원중 타기관지원정산분 1,383억원(자치구 : 1,019억원, 교육청 : 364억원)을 제외한 실가용 규모임
 - ※ 추경편성 추진일정
 - 2002. 7. 16 : 추경편성 기본방향 수립
 - 2002. 7. 22 ~ 8.10 : 추경(안) 실무 심사·조정
 - 2002. 8. 12~16 :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
 - 2002. 8. 20 : 최종결재 및 제135회 임시회 제출 예정

지하철 부채관리 대책 보완

- 지하철 부채현황 : 50,107억원(2001년말 기준)
- 서울시 : 6,818억원(지하철건설)
 - 공 사 : 43,289억원(지하철 25,171억원, 도시철도 18,118억원)

-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 시행(2001 ~ 2007)
 - 서울시·정부 : 건설부채 원리금의 50%를 상환지원
 - ▷ 지원규모 : 2조 6,788억원(정부·시 각각 1조 3,394억원)
 - ▷ 감채기금 설치·운영 : 2002년 6,876억원
 - 양공사 :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으로 건설 잔여부채와 운영부채 상환
 - ▷ 비용절감(매년 2,042억원), 공채 매각수입 추가지원(66 → 100%)
 - 시민 : 원가수준으로 요금 현실화(2년에 100원씩 인상)
 - 이러한 부채관리 결과 2001년에 지하철 부채 1,899억원 감축
- 지하철 부채 특별대책 보완대책 수립중
 - 지하철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와 발생원인 재검토
 -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철부채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
 - 지하철 부채감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노력 계속
 - ※ 건교부에서 도시철도건설부채 해소대책 용역중(2002.10월 완료예정)
 - 2기지하철 건설 차입자금중 이자율이 높은 OECF 전대차관(4.0~ 4.75%)을 저금리(2%내외)의 사무라이본드를 발행 상환
 - ▷ 48,500백만원 발행 상환으로 차환수익 748억원 예상

서울시 재정확충 방안

- 서울시에 불합리한 정부재정지원제도 개선
 - 지방교부세
 - ▷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자치구와 합산하여 산정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가 교부대상에서 제외
 - ▷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 대도시의 특수재정 수요 미반영
 - ※ 2002년도 지방교부세 총액 : 11조 8,212억원 (내국세의 15%)

- ◆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시와 자치구를 분리하여 산정
- ◆ 기초수요 산정기준(12개항목)외에 지하철운영비, 교원의 인건비, 자원회수시설 운영 등 대도시 특수요인 반영

- 지방양여금
 - ▷ 지방양여금 재원의 30%이상을 서울시민이 부담
 - ▷ 도로건설,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자치구를 양여대상에서 제외
 - ※ 2002년도 지방양여금 : 4조 3,496억원

◆ 서울시와 자치구를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 포함

- 국고보조금
 - ▷ 서울시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하여 기준보조율 등에서 차등적용(지하철건설 : 광역시 50%, 서울시 40%)

◆ 최소한 다른 광역시와 같은 수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

→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지원제도 개선을 정부·국회 등에 건의

- 지역간 재정력 격차심화 개선
 - 재정불균형의 주요원인 — 자치구세 세원의 지역편중

종합토지세의 경우

- ▷ 총 4,590억원으로 강남·서초·송파가 34.5% 차지
- ▷ 강남구가 18.8%인 866억원이고, 도봉구는 1.5%인 68억원에 불과하여 12.7배의 격차 발생

재산세의 경우

- ▷ 총 2,134억원으로 강남·서초·송파구가 29.5% 차지
 - ▷ 강남구가 14.5%인 309억원이고, 강북구는 1.9%인 41억원으로 7.5배 격차 발생
 - 재정력격차 완화 추진
 - ▷ 조정교부금(특별교부금)을 강북지역에 우선배정하여 조정
 - ▷ 시 보조금을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5개군으로 구분하여 20~80% 차등지원(9개 분야 27개 사업)
 - 향후 검토사항
 - ▷ 시와 자치구의 공동세 도입 및 역교부세제도 도입 검토
 - ▷ 시와 자치구간 협의에 의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·운영
 - ※ 지역균형발전은 도시기반시설, 거주환경, 교육, 공공문화복지시설, 자치구 재정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“지역균형발전 위원회”를 구성하여 현재 진행중인 “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”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
5.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

-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
-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이양 대상사무로 집중 발굴·이양

□ 지방이양 추진 경위 및 실적

- 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99. 1)
-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
 - ▷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며, 20명 내외로 구성
- 서울시 지방이양추진단 구성·운영
 - ▷ 시의원, 전문가, 시민단체, 공무원 등 20명
 - ▷ 일반행정, 복지농수산, 건설산업 등 3개분과 운영
 - ※ 지방이양 추진실적('99~2002.6월)
 - ▷ 지방이양 확정사무 16개부처 628건, 우리시 발굴건의 559건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지방이양 대상사무 적극 발굴·건의 : 연중
 - ▷ 단편적인 사무가 아닌 기능 위주의 포괄적 사무발굴
- 지방이양추진단 운영으로 이양 대상사무 발굴·검토 등 조정기능 강화
- 사무의 이양률 제고
 - ▷ 치밀한 이양논리를 개발하여 중앙 위원회에 시 의견 적극 반영
 - ▷ 중요사안의 경우 시·도지사협의회 안전상정 등 적극대처
- 이양확정사무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 사후관리 강화

6. 법무행정서비스 수준 제고

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

- 자치법규 현황 - 총 432건(조례 268, 규칙 164)
- 정비방향
 - 시책의 추진근거 법제화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·신속성 확보

- 물량위주의 단편적인 정비를 지양하고, 『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』에 의해 정비
- 정비과제 발굴시 시민,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
- 자치법규 정비계획
 - 시민권익 확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기적으로 발굴·정비
 - ▷ 특별정비기간 설정·운영(상·하반기)
 - ▷ 『자치법규정비 신고센터』운영으로 시민여론 적극 수렴
 -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의하여 시스템적인 입법체계 구축·운영
 - ▷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(2002. 5)

※ 시민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

- 장 소 : 시본청 새서울민원봉사실 내
- 상 담 :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, 서울시 고문변호사
- 주요내용 : 행정, 가사 등 법률상담 및 저소득시민 소송대리

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

- 행정심판 활성화
 - 청구대상 : 자치구청장과 사업소장의 행정처분
 - ※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
 - 행정심판위원회 운영
 - ▷ 구성 : 15명(공무원 6, 변호사 9)
 - ▷ 운영 : 매월 1회 이상 개최, 청구사건 신속히 재결(60일 이내)
 - 행정심판제도 활성화
 - ▷ 직권집행정지 결정, 구술심리확대 등 공정성, 신속성 제고
 - ▷ 처분전 전문가의 법률자문 확대로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 사전예방 강화
- 소송업무 효율적 수행
 - 주요 행정처분전 법률자문을 통한 신중한 법 적용으로 시민권익 침해 방지 노력 강화
 - 『소송상황 종합보고제도』, 『소송수행평가제』등 도입으로 소송 예측 분석·대응능력 제고
 - 『중요소송지정제도』운영으로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종합적·체계적으로 관리

7. 광역행정 교류·협력 강화

『수도권 행정협의회』 운영

- 개 요
 - 설 립 :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거 '88. 11. 16 설치
 - 회 장 : 서울특별시장(당연직 회장)
 - 협의회구성 : 수도권 5개 시·도(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충북)
 - 실무협의회 : 5개 시·도 기획실장으로 구성
 - ※ 운영실적('88.11~현재) : 152건 협의·처리
- 주요기능
 - 수도권 도시계획·건축·토지·환경·교통 등 사전협의
 - 수도권 상호간의 행정정보 및 기술의 교환
 - 기타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등
- 향후계획 - 제14회 회의개최 예정
 - 시 기 : 2002. 8월 하순

- 장 소 : 미정
- ※ 실무협의회 : 본회의와 연계 2주전 개최

□ 활성화 방안

-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를 정례화
- 자치단체간의 공동연구 및 기금설치 등 이행확보 수단을 강화

『전국 시·도지사협의회』 운영

□ 구 성

-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('99.1.23)
- 대 표 : 회장1(서울특별시장), 부회장2(부산광역시장, 전라남도지사)
- 회 의 : 정기회(분기1회)와 임시회로 구분, 각 시도 순회개최
- ※ 운영실적 : 총 9회 개최, 135개 안건(253개 항목) 협의
 - 중앙정부에 110개 안건(228개 항목) 개선·지원건의
 - (회의개최건의 : 103개안건 221개항목, 수시건의 : 7개안건 7개항목)

□ 주요기능

-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입안과 관련된 사항 협의
-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대한 정부·국회에 의견 개진
- 시·도간 공동이익과 관련된 공동관심사 논의 및 교류 증진

□ 향후계획 - 제10회 회의개최 예정

- 일 시 : 2002. 9.24 ~ 25
- 장 소 : 충청북도(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연계 개최)
- ※ 실무협의회 : 2002. 9월초 개최

□ 활성화 방안

- 정기회(분기 1회) 개최이행 확보
- 시·도지사 협의회에 정부측 관계자 필히 참석토록 조치